|  |  |  |
| --- | --- | --- |
| **《기업제품원가 결산제도(잠정)》에****관한 통지**재회[2013]17호국무원유관부(部) 위원회, 유관직속기구, 각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재정청(국), 신장생산건설병단 재무국, 유관중앙관리기업: 기업제품원가결산을 강화하고 제품원가정보의 진실성 및 완전성을 확보하여 기업 및 경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 기업회계준칙 등 국가유관규정에 근거하여, 당국은《기업제품원가결산제도(시행)》을 제정하였다. 2014년 4월 1일부터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대중형기업 범위 내에서 시행되며, 기타 기업에서의 집행을 장려한다. 동 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은 더 이상 《국영공업기업 원가결산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집행 과정 중, 문제가 있을 시, 즉시 당국에 알리기 바란다. 첨부파일: 기업제품원가결산제도(시행)재정부2013년 8월 16일 **기업제품원가결산제도(시범운행)****제 1장 총 칙****제1조** 기업제품원가결산작업을 강화하고, 제품원가정보의 진실성 및 완전성을 확보하여 기업 및 경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 기업회계준칙 등 국가유관규정에 근거하여, 동 제도를 제정하였다. **제2조** 동 제도는 대중형기업에 적용되며, 제조업, 농업, 도소매업, 건축업, 부동산업, 광업, 교통운수업, 정보전송업,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서비스업, 문화업 및 기타 업종 기업이 이에 포함된다. 기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산업은 상술한 유사 업종의 규정을 참조하여 실시한다. 동 제도는 금융보험업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3조** 동 제도에서 일컫는 제품이란, 기업의 일상적인 생산∙경영활동 중, 보유하여 판매에 대비하려는 완제품, 제품, 제공한 노무 또는 서비스를 가리킨다. 동 제도에서 일컫는 제품원가란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재비용, 직원임금 등과 직접 산입할 수 없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배 산입한 각종 간접비용을 가리킨다. **제4조** 기업은 현대정보기술을 충분히 활용해야하며, 기업제품원가예산을 구성 및 집행하고, 집행상황에 대해 분석∙ 심사하고, 원가관리 책임제를 구현하여 제품생산사전(事前), 사중(事中), 사후(事后)의 전 과정의 통제를 강화하며, 제품원가결산과 관리의 각종 기초작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5조** 기업은 발생한 유관비용으로 제품이 현재 장소 및 상태 원칙에 속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 정확하게 제품원가와 기간비용을 구분하여야 한다. **제6조** 기업은 제품생산과정의 특징, 생산경영조직의 유형, 제품종류의 번간（繁简）및 원가관리의 요구에 따라 제품원가결산의 대상, 항목, 범위를 확정하여 즉시 유관비용에 대해 집계하고, 분배 및 이월을 진행해야 한다. 기업제품원가결산에서 적용한 회계정책과 예측은 한번 확정되면, 독단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제7조** 기업은 일반적으로 매달 제품원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기업생산원가, 원가계획실시현황, 제품원가 및 그 변동현황 등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2장 제품원가결산 대상****제8조** 기업은 생산 경영 특징 및 관리 요구에 따라, 원가결산 대상을 확정하고, 원가비용을 집계하며, 제품의 생산원가를 계산해야 한다. **제9조** 제조기업은 일반적으로 제품품종, 일괄주문 또는 제조단계 등에 따라 제품원가결산 대상을 확정한다. (1) 대량 생산제품 또는 관리상 유관 생산단계에서 원가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제품품종에 따라 원가결산 대상을 확정한다. (2) 소량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개별 또는 건별로 제품의 원가결산대상을 확정한다. (3) 연속공정제품 및 관리상 요구에 따라 유관 생산 단계의 원가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매 종(种)제품 및 각 생산단계에서 원가결산 대상을 확정한다. 제품규격이 복잡한 경우, 제품구조, 사용원자재 및 공정과정이 기본적으로 같은 제품은 적당하게 합하여 원가결산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제10조** 농업기업은 일반적으로 생물자산의 품종, 성장기, lot별(군별(群别), 차수(批次)), 농업생산관련 노무작업 등에 따라 원가결산대상을 확정한다. **제11조** 도소매기업은 일반적으로 상품의 품종, 차수, 주문서, 유형별로 원가결산 대상을 확정한다. **제12조** 건축기업은 일반적으로 체결한 개별계약에 따라 원가결산대상을 확정한다. 개별계약에 건조(建造)다항(多项)자산이 포함되는 경우, 기업은 기업회계준칙에서 규정한 계약분립원칙에 근거하여 건조계약의 원가결산대상을 확정한다. 일항(一项) 또는 수항(数项)자산의 건조를 위해 일조(一组)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병합원칙에 따라, 건설계약의 원가결산대상을 확정한다. **제13조** 부동산기업은 일반적으로 개발항목, 종합개발 기일수, 제품유형 등을 고려하여 원가결산 대상을 확정한다. **제14조** 광업기업은 일반적으로 채굴한 제품에 따라 원가결산대상을 확정한다. **제15조** 교통운수기업이 운수도구로 화물, 여객운수에 종사할 경우, 일반적으로 항로, 항차, 단선(船)(기계), 기본 역 등에 따라 원가결산 대상을 확정한다. 화물 등 하역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화물, 원가책임부문, 작업장소 등에 따라 원가결산 대상을 확정한다. 창고저장, 적재, 항만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부두, 창고, 야적장, 오일탱크, 기밀창고, 하치장 또는 주요화물의 품종, 원가책임부문 등에 따라 원가결산 대상을 확정한다. **제16조** 정보전송기업은 일반적으로 기초 전신업무, 통신 부가가치 업무와 기타 정보전송 업무 등에 따라 원가결산대상을 확정한다. **제17조** 소프트웨어 기술서비스기업의 과학기술설계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 인공원가 비중이 비교적 높은 경우, 일반적으로 과학기술 연구과제, 단일계약프로젝트수주, 개발프로젝트, 기술서비스고객 등에 따라 원가결산대상을 확정한다. 계약프로젝트의 규모가 크고 개발기간이 비교적 긴 경우, 단계를 구분하여 원가결산 대상을 확정한다. **제18조** 문화기업은 일반적으로 제작한 제품의 종류, 차수, 인쇄횟수, 간행물 발간 횟수 등에 따라 원가결산 대상을 확정한다. **제19조** 동 제도에서 명확하게 규정한 것 이외의, 기타 업종 기업은 상술한 유사업종 기업을 참조하여 제품원가결산 대상을 확정한다. **제20조** 기업은 제 8조에서 제 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품원가결산 대상을 확정하며, 제품원가결산을 진행한다. 기업내부에 유관요구가 있을 경우, 현대기업의 다차원적(多维度), 다층적（多层次）관리 수요에 따라, 다원화된 제품원가결산 대상을 확정한다. 다차원적이란, 제품의 최소생산단계 또는 작업을 기초로, 기업 유관부문의 생산 공정 및 그 상응하는 원가관리 요구에 따라, 현대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조합한 제품의 다차원적, 제조절차의 다차원적, 작업장팀의 다차원적, 생산설비의 다차원적, 거래처주문서의 다차원적, 변동원가의 다차원적 및 고정원가의 다차원적 등 서로 다른 원가결산대상을 말한다. 다층적이란, 기업원가관리수요에 따라, 기업관리부문, 공장, 작업장 및 작업팀 등으로 분류한 원가관리통제 단계를 말한다. **제3장 제품원가결산 항목 및 범위****제21조** 기업은 생산경영 특징 및 관리요구에 따라, 원가의 경제용도와 생산요소 내용의 상호결합원칙 또는 원가성질∙상태(性态)등에 근거하여 원가항목을 설정한다. **제22조** 제조기업은 일반적으로 직접자재, 연료 및 동력, 직접인공 및 제조비용 등을 원가항목으로 설정한다. 직접자재란, 실제 제품을 구성하는 원자재 및 제품형성을 돕는 주요 자재 및 부조자재를 가리킨다. 연료 및 동력이란, 직접 제품생산에 사용된 연료 및 동력을 가리키며, 직접인공은 제품생산에 직접 투입된 근로자의 임금을 의미한다. 제조비용은 기업이 생산한 제품 및 노무제공으로 발생한 각 종 간적비용을 가리키며, 기업생산부문(생산 작업장)에서 발생한 수도전기료,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관리인원의 임금, 노동보호비, 국가규정의 유관 환경보호비용, 계절성 및 수리기간의 조업정지손해 등이 이에 포함된다. **제23조** 농업기업은 일반적으로 직접자재, 직접인공, 기계작업비, 기타직접비용, 간접비용 등을 원가항목으로 설정한다. 직접자재란, 재식농업 생산 중 소모한 자산 또는 외부에서 구입한 종자, 종묘, 사료, 비료, 농약, 연료 및 동력, 수리용자재 및 부품, 원자재 및 기타 자재 등과 양식업 생산 중 직접 양식생산에 사용한 묘종(苗种), 사료, 비료, 연료, 동력, 가축∙가금 의약비 등을 말한다. 직접인공이란, 농업생산에 직접 투입된 근로자의 임금을 가리키며,기계작업비란, 재직농업 생산과정 중 농업용기계를 사용하여 진행한 경작, 파종, 시비, 제초, 살충, 수확, 탈록 등 기계작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기타 직접비용은 직접자재, 직접인공 및 기계작업비를 제외한 축력작업비용 등 직접 비용을 말하며, 간접비용은 원가결산대상에 상각, 분배계상해야 하는 운송비, 관개비, 고정자산감가상각비, 임대비, 보수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 **제24조** 도소매기업은 일반적으로 매입원가, 관련 세금, 매입비용 등을 원가항목으로 설정한다. 매입원가란, 제품의 구매대금을 말하며, 관련세금은 제품을 구매하고 발생한 수입관세, 자원세 및 불공제 증치세 등을 가리킨다. 매입비용은 잡비, 하역비, 보험료, 창고료, 정리료, 합리적 소모 및 기타 제품 구매원가에 속하는 비용을 가리킨다. 매입비용이 적은 경우, 발생 시, 당기 판매비용에 직접 계상할 수 있다. **제25조** 건축기업은 일반적으로 직접인공, 직접자재, 기계사용료, 기타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 등을 원가항목으로 설정한다. 건축기업이 일부 공정을 외주한 경우, 외주원가항목을 설정할 수 있다. 직접인공이란, 국가규정에 따라 시공과정 중 설치공정시공에 직접 투입된 근로자 및 공정제작구조재 및 자재운송(运料), 보조자재 등을 위해 시공현장에 직접 투입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말한다. 직접자재란, 시공과정 중 소모비용, 공정을 구성하는 실질적 자재, 구조품, 기계부품과 공정형성을 돕는 기타 자재 및 회전자재의 임대비, 감가상각비 등을 가리킨다. 기계사용료는 시공과정 중 사용한 시공기계에서 발생한 기계사용비, 외부기관의 시공기계 임대비 및 규정에 따라 지급한 시공기계의 출입비용(进出场费) 등을 말한다. 기타직접비용은 시공과정 중 발생한 자재운반비, 자재하역∙보관비, 연료동력비, 임시시설상각비, 생산도구와 용구사용비, 검사실험시, 공사위치 측량비용, 공사지점 납부비용, 장소정리비용 및 단독 구분 및 확실히 예측할 수 있는 건조계약체결을 위해 발생한 출장비, 입찰비 등을 말한다. 간접비용은 기업의 각 시공단위가 공정시공을 조직하고 관리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외주비용은 국가규정에 따라 외주하고, 외주단위에 지급한 공정 대금을 말한다. **제26조** 부동산 기업은 일반적으로 토지수용 및 철거이전보상비, 전기공정비, 건축 설치공정비, 인프라구축비, 공공시설비용, 개발간접비용, 차입관련 재무비용 등을 원가항목으로 설정한다. 토지수용 및 철거 보상비란, 토지개발사용권(또는 개발권) 취득을 위해 발생한 각종 비용을 가리키며, 토지매입가격 또는 양도금, 대시정부속비, 취득세, 경지점용세, 토지사용료, 토지미개발비, 농작물 보상비, 붕괴위험건물보상비, 토지변경용도와 초과면적으로 보충납부한 지가 및 상관세금, 이주보상비용, 안착 및 철거이주비용, 재이주건물건설 비용 등을 가리킨다. 전기공정비는 프로젝트 개발 전기(前期)에 발생한 정부허가 수수료, 입찰대리비, 임시시설비 및 수문지질 탐사비, 측량, 계획, 설계, 가행성연구, 자문논증비, 기획건립, 토지고르기 등 전기(前期)비용을 가리킨다. 　건축설치공정비는 프로젝트 개발과정 중 발생한 각종 주건물 건축공정비용, 시설공정비 및 인테리어비용 등을 말한다. 인프라구축비용은 프로젝트개발과정 중 발생한 도로, 수도/전기/가스/난방 공급, 오염물배수, 홍수배수, 소방, 통신, 조명, 유선TV, 광대역 네트워크, 지능화 등 커뮤니티네트워크 공정비 및 환경위생, 원림녹화 등 원림환경공정비용 등을 말한다. 공공시설비용은 개발프로젝트 내에서 발생한, 독립적이고, 비영리적이되 재산권이 전체 업주에 속하거나 지방정부, 정부공공사업단위에 무상으로 증여한 공공부대시설비용을 가리킨다. 개발간접비용은 기업이 개발프로젝트를 직접 조직하고 관리하기 위해 발생한 것으로 원가결산대상에 직접 포함시킬 수 없는 공정감리비용, 건설비심사(审核)비, 결산심사비, 공정보험료 등을 말한다. 업주를 대리해서 원천징수납부한 공공의 유지보수기금 등은 제품원가에 계상할 수 없다. 차입관련 재무비용이란, 자본화조건에 부합하는 차입비용을 일컫는다. 부동산기업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기반시설, 건축설치 등 공정건설은 건축기업 설치 유관 원가항목을 참조하도록 한다. **제27조** 광업기업은 일반적으로 직접자재, 연료 및 동력, 직접인공, 간접비용 등을 원가항목으로 설정한다. 직접자재란, 채굴과정 중 직접 소모되는 첨가제, 촉매제, 기폭제, 보조제, 촉매 및 정화자재, 포장물 등을 가리킨다. 연료 및 동력은 채굴 생산 과정에서 직접 소모되는 각종 고체∙액체∙ 기체연료 및 수도전기, 가스, 바람, 질소, 산소 등의 동력을 가리킨다. 직접인공은 직접 채굴생산에 투입된 근로자의 임금을 의미하며, 간접비용은 공장∙광장 채굴생산을 조직 및 관리하기 위해 발생하는 근로자의 임금, 노동보호비, 고정자산감가상각, 무형자산상각비, 보험료, 사무비, 환경보호비, 화(검)험계량비, 설계제도비, 조업정지손해, 세차비, 환적비, 연구시험비용, 정보시스템유지보호비 등을 가리킨다. **제28조** 교통운수기업은 일반적으로 운영비용, 운반구 고정비용과 비운영기간의 비용 등을 원가항목으로 설정한다. 운영비용이란, 기업이 화물 또는 여객을 운송, 하역, 적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운영비용을 가리키며, 화물비, 항만비, 이착륙 및 정기(停机)비, 중계비, 다리통행료, 연료 및 동력, 항해용선비, 안전구조비, 호송비, 하역 정리비, 적재비 등이 이에 포함된다. 운반구 고정비용은 운반구의 고정비용과 공동비용등을 가리키며, 검역비, 차량선박 사용세, 노동보호비,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임대비, 예비품, 보험비, 운전 및 관련 오퍼레이터 임금 및 그 식비 등이 이에 포함된다. 비운영기간비용이란, 불가항력적인 제약 또는 업종관례 등의 원인으로 일시정지하여 발생한 유관 비용 등이 이에 포함된다. **제29조** 정보전송기업은 일반적으로 직접인력설치비,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저가소모품상각, 업무비, 회로 및 네트워크 요소 임대료 등을 원가항목으로 설정한다. 직접인력설치비란 정보전송서비스에 투입된 근로자의 임금을 가리키며, 업무비는 통신생산의 각종 업무에 지급한 비용으로, 주파수 점용비, 위성관측제어비, 안전보위(保卫)비, 번호(码号)자원비, 설비가 사용한 외부구매전력비, 소유한 전원설비가 사용한 연료 및 윤료비(润料费) 등이 이에 포함된다. 회로 및 네트워크 요소 임대료는 기타 정보전송 기업의 회로 및 네트워크 등의 전송시스템 및 설비에 지급한 임대료 등을 가리킨다. **제30조**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기업은 일반적으로 직접인력설치비, 외부구매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비용, 장소 임대료,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출장비, 교육훈련비, 외주원가, 전기수도료, 사무비 등을 원가항목으로 설정한다. 직접인공이란, 직접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에 투입된 근로자의 임금을 가리킨다. 외부구매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비용은 기업이 특정항목을 개발하기 위해 외부에서 보조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 구입 시 발생한 비용을 의미한다. 장소입대료는 기업이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정보기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임대한 장소에 지급하는 비용 등을 가리키며, 외주원가란 기업이 유관 항목의 일부를 기타 단위에 외주하여 지급한 비용을 가리킨다. **제31조** 문화기업은 일반적으로 개발원가 및 제조원가 등을 원가항목으로 설정한다. 개발원가란, 선정 및 기획시작에서부터 정식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가리키며, 정보수집, 기획, 시장조사, 논증선택, 입항 등 단계에서 발생하는 정보수집비, 연구조사교통비, 통신비, 원고청탁비, 회의비, 개발에 투입된 직원의 임금 등이 이에 포함된다. 제작원가란, 제품내용 제작원가 및 물리적형태의 제작원가를 가리키며, 원고료, 원고심사비용, 교정비용, 입력비용, 편집가공비, 직접자재비, 인쇄비, 고정자산감가상각비, 제작에 투입된 직원의 임금 등이 이에 포함된다. 영화기업의 제작원가는 기업이 영화제작, 더빙, 현상·인화 등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가리키며, 대본비, 연기자와 스텝임금, 필름 및 테이프 비용, 메이크업, 공연도구, 무대장치비용, 장소임대료, 편집비, 현상·인화비용 등이 이에 포함된다. **제32조** 동 제도에서 명확하게 규정한 것 이외의, 기타 업종기업은 상술한 유사업종 기업을 참조하여 원가항목을 확정하도록 한다. **제33조** 기업은 제 21조부터 32조 규정에 근거하여 제품원가 결산항목을 확정하고, 제품원가 결산을 진행해야 한다. 기업내부에 유관관리 요구가 있는 경우, 현대기업 다차원적, 다층적인 원가관리요구에 따라 현대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유관 원가항목을 조합하고, 유관 원가정보를 출력(输出)한다. **제 4장 제품원가집계, 분배 및 이월****제34조** 기업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어느 한 원가결산대상이 부담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제품원가항목유형에 따라 제품 원가 결산대상의 생산원가에 직접 계상해야 한다. 여러 개의 원가결산대상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 합리적인 분배기준을 선택하여 분배계상하도록 한다. 기업은 생산경영특징에 따라, 정상적인 생산능력수준을 기초로, 자원소모방식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분배기준을 확정한다. 기업은 권한 및 책임발생주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제품의 생산특징 및 관리요구에 근거하여 원가를 이월한다. **제35조** 제조기업에서 발생한 직접자재 및 직접인력비를 원가결산대상에 직접 계상할 수 있는 경우, 원가결산대상의 생산원가에 직접 계상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합리적인 분배기준에 따라 분배계상해야 한다. 제조기업이 외부에서 연료 및 동력을 구입한 경우, 실제 소모한 수량 또는 합리적인 분배기준에 따라 연료 및 동력비용에 대해 집계분배를 진행해야 한다. 생산부문이 직접 생산에 사용한 연료 및 동력은 생산원가에 직접계상하며, 생산부문이 간접적으로 사용한 (예를 들어 조명, 난방) 연료 및 동력은 제조비용에 계상한다. 제조기업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한 연료 및 동력은 동 조 제 3관을 참조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조기업 보조생산부문이 생산부문에 노무 및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은 생산원가 항목을 참고하여 집계해야 하며, 합리적인 분배기준에 따라 각 원가 결산대상의 생산원가에 분배하여 계상해야한다. 보조생산부문간 상호 제공한 노무, 작업원가는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상호 분배한다. 상호 제공한 노무, 작업이 많지 않은 경우, 상호 분배를 진행할 필요가 없으며, 보조생산부문이외의 수익단위에 직접분배한다. **제36조** 제조기업에서 발생한 제조비용은 합리적인 분배기준에 따라 월별로 각 원가결산대상의 생산원가를 분배하여 계상해야 한다. 기업은 기계가동시간, 근로자노동시간, 계획분배율 등을 분배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계절성 생산기업이 조업중지기간에 발생한 제조비용은 조업기간에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하며, 조업기간에 발생한 제조비용과 함께 제품의 생산원가로 계상해야 한다. 제조기업은 자체경영관리특징 및 조건에 따라, 현대정보기술을 활용하고 작업원가법을 적용하여 원가결산대상에 직접 포함될 수 없는 원가에 대해 집계 및 분배를 진행해야 한다. **제37조** 제조기업은 생산경영특징 및 연산품, 부산품의 공정요구에 따라, 계수분배법, 실물량분배법, 상대적매매가격분배법 등의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연산품생산원가를 분배한다. **제38조** 제조기업에서 발생한 자재원가는 실물유동방식, 관리요구, 실물성질등의 실제 현황에 근거하여 선입선출법, 가중평균법, 개별원가계산법 등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한다. **제39조** 제조기업은 제품의 생산특징 및 관리요구에 근거하여, 원가계산기간에 따라 원가를 이월한다. 제조기업은 원자재소모량, 생산량법, 고정비율법, 원자재공제법, 공사진행기준 등의 방법을 선택하여 합리적으로 완제품 및 제품의 실제 원가를 확정하고, 입고한 완제품의 제품원가를 창고저장제품항목으로 이월한다. 제품수량, 금액이 중요하지 않거나 제품기초기말수량변동이 크지 않은 경우, 제품원가로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 계절성 생산기업 등을 제외하고, 제조기업 완제품 및 제품의 원가는 월별로 원가계산기간을 결산하여야 한다. **제40조** 농업기업은 제조기업의 제품원가에 대한 집계, 분배 및 이월을 참조하여야 한다. **제41조** 도소매기업에서 발생한 매입원가, 관련세금은 원가결산대상 원가에 직접 계상한다. 매입비용이 발생한 경우, 경영관리특징과 결합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원가결산대상 원가를 분배하여 계상 할 수 있다. 매입비용이 적은 경우, 발생 시 당기 판매비용에 직접 계상할 수 있다. 도소매기업은 실물 흐름 방식, 관리요구, 실물 성질 등 실제상황에 따라, 선입선출법, 가중평균법, 개별원가계산법, 매가환원법 등 방법을 적용하여 제품원가를 이월할 수 있다. **제42조** 건축기업에서 발생한 유관비용을 어느 한 원가결산대상이 부담하는 경우, 원가결산대상에 원가를 직접계상해야 한다. 여러 개의 원가결산대상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 직접비용비율, 고정비율 및 임금비율 등 합리적 분배기준을 선택하여 원가결산대상 원가를 분배하여 계상해야 한다. 건축기업은 《기업회계준칙 제 15호--건설계약》의 규정에 따라 제품원가를 이월한다. 계약결과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 공사진행기준을 적용하여 당기 제공서비스의 원가를 확정 및 이월한다. 계약결과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는 경우, 이미 발생한 원가는 직접 이월한다. **제43조** 부동산기업에서 발생한 유관비용을 어느 한 원가결산대상이 부담하는 경우, 원가결산대상에 원가를 직접계상해야 한다. 여러 개의 원가결산대상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 점유지 면적비율, 예산제조비율, 건축면적비율 등 합리적인 분배기준을 선택하여 원가결산대상 원가를 분배하여 계상해야 한다. **제44조** 광업기업은 제조기업을 참조하여 제품원가에 대한 집계, 분배 및 이월을 진행한다. **제45조** 교통운수기업에서 발생한 운영비용은 원가에 따라 결산대상에 집계해야 한다. 교통운수기업에서 발생한 운반구 고정비용을 어느 한 원가결산대상이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경우, 원가결산대상의 원가로 직접 계상해야 한다. 여러 개의 원가결산대상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 경영기한 등 경영특징에 맞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배기준을 적용하여 각 원가결산대상의 원가를 분배하여 계상해야 한다. 교통운수기업에서 발생한 비경영기간비용은 제조업 계절성 생산기업을 참고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46조** 정보전송,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 등 기업은 경영특징 및 조건에 따라 현대정보기술을 이용하며, 작업원가법 등을 적용하여 제품원가에 대한 집계 및 분배를 할 수 있다. **제47조** 문화기업에서 발생한 유관원가항목비용을 어느 한 원가결산 대상이 부담하는 경우, 원가결산대상 원가에 직접 계상한다. 여러 개의 원가결산 대상이 공동으로 부담한 경우, 인원비율, 작업비율, 자재소모비율 등 분배기준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원가결산 대상 원가에 계상한다. **제48조** 기업은 원가기획, 원가기준, 원가정액 등으로 실제원가를 대신할 수 없다. 기업은 적용한 원가기획, 원가기준, 원가정액 등 유사원가는 직접 자재 일상 원가결산을 진행한다. 기말에 소모한 직접자재의 원가기획 또는 원가정액 등 유사원가를 실제원가로 조정한다. **제49조** 동 제도에서 이미 명확히 규정한 업종 이외의 기타 업종 기업은 상술한 유사 업종의 규정을 참조하여 제품원가에 대한 집계, 분배 및 이월을 진행하도록 한다. **제50조** 기업은 제 34조에서 49조 규정에 따라 제품원가에 대해 집계, 분배 및 이월을 진행한다. 기업내부에 관리 유관 요구가 있는 경우, 현대정보기술을 활용하고, 다차원적이고, 다층적인 원가결산대상기초로, 유관 비용에 대한 집계, 분배 및 이월을 진행한다. **제 5장 부 칙****제51조** 소형기업은 동 제도를 참고하도록 한다. **제52조** 동 제도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제53조** 동 제도를 적용하는 기업은 더 이상《국영공업기업 원가결산방법》 을 실시하지 않는다.  |  | **关于印发《企业产品成本核算制度****（试行）》的通知**财会[2013]17号国务院有关部委、有关直属机构，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有关中央管理企业： 　　　为加强企业产品成本核算，保证产品成本信息真实、完整，促进企业和经济社会的可持续发展，根据《中华人民共和国会计法》、企业会计准则等国家有关规定，我部制定了《企业产品成本核算制度（试行）》，现予印发，自2014年1月1日起在除金融保险业以外的大中型企业范围内施行，鼓励其他企业执行。执行本制度的企业不再执行《国营工业企业成本核算办法》。　　执行中有何问题，请及时反馈我部。　　附件：企业产品成本核算制度（试行）　　财政部　　2013年8月16日**企业产品成本核算制度（试行）****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加强企业产品成本核算工作，保证产品成本信息真实、完整，促进企业和经济社会的可持续发展，根据《中华人民共和国会计法》、企业会计准则等国家有关规定制定本制度。　　**第二条** 本制度适用于大中型企业，包括制造业、农业、批发零售业、建筑业、房地产业、采矿业、交通运输业、信息传输业、软件及信息技术服务业、文化业以及其他行业的企业。其他未明确规定的行业比照以上类似行业的规定执行。　　本制度不适用于金融保险业的企业。　　**第三条** 本制度所称的产品，是指企业日常生产经营活动中持有以备出售的产成品、商品、提供的劳务或服务。　　本制度所称的产品成本，是指企业在生产产品过程中所发生的材料费用、职工薪酬等，以及不能直接计入而按一定标准分配计入的各种间接费用。　　**第四条** 企业应当充分利用现代信息技术，编制、执行企业产品成本预算，对执行情况进行分析、考核，落实成本管理责任制，加强对产品生产事前、事中、事后的全过程控制，加强产品成本核算与管理各项基础工作。　　**第五条** 企业应当根据所发生的有关费用能否归属于使产品达到目前场所和状态的原则，正确区分产品成本和期间费用。　　**第六条** 企业应当根据产品生产过程的特点、生产经营组织的类型、产品种类的繁简和成本管理的要求，确定产品成本核算的对象、项目、范围，及时对有关费用进行归集、分配和结转。　　企业产品成本核算采用的会计政策和估计一经确定，不得随意变更。　　**第七条** 企业一般应当按月编制产品成本报表，全面反映企业生产成本、成本计划执行情况、产品成本及其变动情况等。**第二章 产品成本核算对象**　**第八条** 企业应当根据生产经营特点和管理要求，确定成本核算对象，归集成本费用，计算产品的生产成本。　　**第九条** 制造企业一般按照产品品种、批次订单或生产步骤等确定产品成本核算对象。　　（一）大量大批单步骤生产产品或管理上不要求提供有关生产步骤成本信息的，一般按照产品品种确定成本核算对象。　　（二）小批单件生产产品的，一般按照每批或每件产品确定成本核算对象。　　（三）多步骤连续加工产品且管理上要求提供有关生产步骤成本信息的，一般按照每种（批）产品及各生产步骤确定成本核算对象。　　产品规格繁多的，可以将产品结构、耗用原材料和工艺过程基本相同的产品，适当合并作为成本核算对象。　　**第十条** 农业企业一般按照生物资产的品种、成长期、批别（群别、批次）、与农业生产相关的劳务作业等确定成本核算对象。　　**第十一条** 批发零售企业一般按照商品的品种、批次、订单、类别等确定成本核算对象。　　**第十二条** 建筑企业一般按照订立的单项合同确定成本核算对象。单项合同包括建造多项资产的，企业应当按照企业会计准则规定的合同分立原则，确定建造合同的成本核算对象。为建造一项或数项资产而签订一组合同的，按合同合并的原则，确定建造合同的成本核算对象。　　**第十三条** 房地产企业一般按照开发项目、综合开发期数并兼顾产品类型等确定成本核算对象。　**第十四条** 采矿企业一般按照所采掘的产品确定成本核算对象。　**第十五条** 交通运输企业以运输工具从事货物、旅客运输的，一般按照航线、航次、单船（机）、基层站段等确定成本核算对象；从事货物等装卸业务的，可以按照货物、成本责任部门、作业场所等确定成本核算对象；从事仓储、堆存、港务管理业务的，一般按照码头、仓库、堆场、油罐、筒仓、货棚或主要货物的种类、成本责任部门等确定成本核算对象。　　**第十六条** 信息传输企业一般按照基础电信业务、电信增值业务和其他信息传输业务等确定成本核算对象。　　**第十七条** 软件及信息技术服务企业的科研设计与软件开发等人工成本比重较高的，一般按照科研课题、承接的单项合同项目、开发项目、技术服务客户等确定成本核算对象。合同项目规模较大、开发期较长的，可以分段确定成本核算对象。　　**第十八条** 文化企业一般按照制作产品的种类、批次、印次、刊次等确定成本核算对象。　　**第十九条** 除本制度已明确规定的以外，其他行业企业应当比照以上类似行业的企业确定产品成本核算对象。　　**第二十条** 企业应当按照第八条至第十九条规定确定产品成本核算对象，进行产品成本核算。企业内部管理有相关要求的，还可以按照现代企业多维度、多层次的管理需要，确定多元化的产品成本核算对象。　　多维度，是指以产品的最小生产步骤或作业为基础，按照企业有关部门的生产流程及其相应的成本管理要求，利用现代信息技术，组合出产品维度、工序维度、车间班组维度、生产设备维度、客户订单维度、变动成本维度和固定成本维度等不同的成本核算对象。　　多层次,是指根据企业成本管理需要,划分为企业管理部门、工厂、车间和班组等成本管控层次。**第三章 产品成本核算项目和范围**　　**第二十一条** 企业应当根据生产经营特点和管理要求，按照成本的经济用途和生产要素内容相结合的原则或者成本性态等设置成本项目。　　**第二十二条** 制造企业一般设置直接材料、燃料和动力、直接人工和制造费用等成本项目。　　直接材料，是指构成产品实体的原材料以及有助于产品形成的主要材料和辅助材料。　　燃料和动力，是指直接用于产品生产的燃料和动力。　　直接人工，是指直接从事产品生产的工人的职工薪酬。　　制造费用，是指企业为生产产品和提供劳务而发生的各项间接费用，包括企业生产部门（如生产车间）发生的水电费、固定资产折旧、无形资产摊销、管理人员的职工薪酬、劳动保护费、国家规定的有关环保费用、季节性和修理期间的停工损失等。　　**第二十三条** 农业企业一般设置直接材料、直接人工、机械作业费、其他直接费用、间接费用等成本项目。　　直接材料，是指种植业生产中耗用的自产或外购的种子、种苗、饲料、肥料、农药、燃料和动力、修理用材料和零件、原材料以及其他材料等；养殖业生产中直接用于养殖生产的苗种、饲料、肥料、燃料、动力、畜禽医药费等。　　直接人工，是指直接从事农业生产人员的职工薪酬。　　机械作业费，是指种植业生产过程中农用机械进行耕耙、播种、施肥、除草、喷药、收割、脱粒等机械作业所发生的费用。　　其他直接费用，是指除直接材料、直接人工和机械作业费以外的畜力作业费等直接费用。　　间接费用，是指应摊销、分配计入成本核算对象的运输费、灌溉费、固定资产折旧、租赁费、保养费等费用。　　**第二十四条** 批发零售企业一般设置进货成本、相关税费、采购费等成本项目。　　进货成本，是指商品的采购价款。　　相关税费，是指购买商品发生的进口关税、资源税和不能抵扣的增值税等。　　采购费，是指运杂费、装卸费、保险费、仓储费、整理费、合理损耗以及其他可归属于商品采购成本的费用。采购费金额较小的，可以在发生时直接计入当期销售费用。　　**第二十五条** 建筑企业一般设置直接人工、直接材料、机械使用费、其他直接费用和间接费用等成本项目。建筑企业将部分工程分包的，还可以设置分包成本项目。　　直接人工，是指按照国家规定支付给施工过程中直接从事建筑安装工程施工的工人以及在施工现场直接为工程制作构件和运料、配料等工人的职工薪酬。　　直接材料，是指在施工过程中所耗用的、构成工程实体的材料、结构件、机械配件和有助于工程形成的其他材料以及周转材料的租赁费和摊销等。　　机械使用费，是指施工过程中使用自有施工机械所发生的机械使用费，使用外单位施工机械的租赁费，以及按照规定支付的施工机械进出场费等。　　其他直接费用，是指施工过程中发生的材料搬运费、材料装卸保管费、燃料动力费、临时设施摊销、生产工具用具使用费、检验试验费、工程定位复测费、工程点交费、场地清理费，以及能够单独区分和可靠计量的为订立建造承包合同而发生的差旅费、投标费等费用。　　间接费用，是指企业各施工单位为组织和管理工程施工所发生的费用。　　分包成本，是指按照国家规定开展分包，支付给分包单位的工程价款。　　**第二十六条** 房地产企业一般设置土地征用及拆迁补偿费、前期工程费、建筑安装工程费、基础设施建设费、公共配套设施费、开发间接费、借款费用等成本项目。　　土地征用及拆迁补偿费，是指为取得土地开发使用权（或开发权）而发生的各项费用，包括土地买价或出让金、大市政配套费、契税、耕地占用税、土地使用费、土地闲置费、农作物补偿费、危房补偿费、土地变更用途和超面积补交的地价及相关税费、拆迁补偿费用、安置及动迁费用、回迁房建造费用等。　　前期工程费，是指项目开发前期发生的政府许可规费、招标代理费、临时设施费以及水文地质勘察、测绘、规划、设计、可行性研究、咨询论证费、筹建、场地通平等前期费用。　　建筑安装工程费，是指开发项目开发过程中发生的各项主体建筑的建筑工程费、安装工程费及精装修费等。　　基础设施建设费，是指开发项目在开发过程中发生的道路、供水、供电、供气、供暖、排污、排洪、消防、通讯、照明、有线电视、宽带网络、智能化等社区管网工程费和环境卫生、园林绿化等园林、景观环境工程费用等。　　公共配套设施费，是指开发项目内发生的、独立的、非营利性的且产权属于全体业主的，或无偿赠与地方政府、政府公共事业单位的公共配套设施费用等。　　开发间接费，指企业为直接组织和管理开发项目所发生的，且不能将其直接归属于成本核算对象的工程监理费、造价审核费、结算审核费、工程保险费等。为业主代扣代缴的公共维修基金等不得计入产品成本。　　借款费用，是指符合资本化条件的借款费用。　　房地产企业自行进行基础设施、建筑安装等工程建设的，可以比照建筑企业设置有关成本项目。　　**第二十七条** 采矿企业一般设置直接材料、燃料和动力、直接人工、间接费用等成本项目。　　直接材料，是指采掘生产过程中直接耗用的添加剂、催化剂、引发剂、助剂、触媒以及净化材料、包装物等。　　燃料和动力，是指采掘生产过程中直接耗用的各种固体、液体、气体燃料，以及水、电、汽、风、氮气、氧气等动力。　　直接人工，是指直接从事采矿生产人员的职工薪酬。　　间接费用，是指为组织和管理厂（矿）采掘生产所发生的职工薪酬、劳动保护费、固定资产折旧、无形资产摊销、保险费、办公费、环保费用、化（检）验计量费、设计制图费、停工损失、洗车费、转输费、科研试验费、信息系统维护费等。　　**第二十八条** 交通运输企业一般设置营运费用、运输工具固定费用与非营运期间的费用等成本项目。　　营运费用，是指企业在货物或旅客运输、装卸、堆存过程中发生的营运费用，包括货物费、港口费、起降及停机费、中转费、过桥过路费、燃料和动力、航次租船费、安全救生费、护航费、装卸整理费、堆存费等。铁路运输企业的营运费用还包括线路等相关设施的维护费等。　　运输工具固定费用，是指运输工具的固定费用和共同费用等，包括检验检疫费、车船使用税、劳动保护费、固定资产折旧、租赁费、备件配件、保险费、驾驶及相关操作人员薪酬及其伙食费等。　　非营运期间费用，是指受不可抗力制约或行业惯例等原因暂停营运期间发生的有关费用等。　　**第二十九条** 信息传输企业一般设置直接人工、固定资产折旧、无形资产摊销、低值易耗品摊销、业务费、电路及网元租赁费等成本项目。　　直接人工，是指直接从事信息传输服务的人员的职工薪酬。　　业务费，是指支付通信生产的各种业务费用，包括频率占用费，卫星测控费，安全保卫费，码号资源费，设备耗用的外购电力费，自有电源设备耗用的燃料和润料费等。　　电路及网元租赁费，是指支付给其他信息传输企业的电路及网元等传输系统及设备的租赁费等。　　**第三十条** 软件及信息技术服务企业一般设置直接人工、外购软件与服务费、场地租赁费、固定资产折旧、无形资产摊销、差旅费、培训费、转包成本、水电费、办公费等成本项目。　　直接人工，是指直接从事软件及信息技术服务的人员的职工薪酬。外购软件与服务费，是指企业为开发特定项目而必须从外部购进的辅助软件或服务所发生的费用。　　场地租赁费，是指企业为开发软件或提供信息技术服务租赁场地支付的费用等。转包成本，是指企业将有关项目部分分包给其他单位支付的费用。　　**第三十一条** 文化企业一般设置开发成本和制作成本等成本项目。　　开发成本，是指从选题策划开始到正式生产制作所经历的一系列过程，包括信息收集、策划、市场调研、选题论证、立项等阶段所发生的信息搜集费、调研交通费、通信费、组稿费、专题会议费、参与开发的职工薪酬等。制作成本，是指产品内容制作成本和物质形态的制作成本，包括稿费、审稿费、校对费、录入费、编辑加工费、直接材料费、印刷费、固定资产折旧、参与制作的职工薪酬等。电影企业的制作成本，是指企业在影片制片、译制、洗印等生产过程所发生的各项费用，包括剧本费、演职员的薪酬、胶片及磁片磁带费、化妆费、道具费、布景费、场租费、剪接费、洗印费等。　　**第三十二条** 除本制度已明确规定的以外，其他行业企业应当比照以上类似行业的企业确定成本项目。　　**第三十三条** 企业应当按照第二十一条至第三十二条规定确定产品成本核算项目，进行产品成本核算。企业内部管理有相关要求的，还可以按照现代企业多维度、多层次的成本管理要求，利用现代信息技术对有关成本项目进行组合，输出有关成本信息。**第四章 产品成本归集、分配和结转**　　**第三十四条** 企业所发生的费用，能确定由某一成本核算对象负担的，应当按照所对应的产品成本项目类别，直接计入产品成本核算对象的生产成本；由几个成本核算对象共同负担的，应当选择合理的分配标准分配计入。　　企业应当根据生产经营特点，以正常生产能力水平为基础，按照资源耗费方式确定合理的分配标准。　　企业应当按照权责发生制的原则，根据产品的生产特点和管理要求结转成本。　　**第三十五条** 制造企业发生的直接材料和直接人工，能够直接计入成本核算对象的，应当直接计入成本核算对象的生产成本，否则应当按照合理的分配标准分配计入。　　制造企业外购燃料和动力的，应当根据实际耗用数量或者合理的分配标准对燃料和动力费用进行归集分配。生产部门直接用于生产的燃料和动力，直接计入生产成本；生产部门间接用于生产（如照明、取暖）的燃料和动力，计入制造费用。制造企业内部自行提供燃料和动力的，参照本条第三款进行处理。　　制造企业辅助生产部门为生产部门提供劳务和产品而发生的费用，应当参照生产成本项目归集，并按照合理的分配标准分配计入各成本核算对象的生产成本。辅助生产部门之间互相提供的劳务、作业成本，应当采用合理的方法，进行交互分配。互相提供劳务、作业不多的，可以不进行交互分配，直接分配给辅助生产部门以外的受益单位。　　**第三十六条** 制造企业发生的制造费用，应当按照合理的分配标准按月分配计入各成本核算对象的生产成本。企业可以采取的分配标准包括机器工时、人工工时、计划分配率等。　　季节性生产企业在停工期间发生的制造费用，应当在开工期间进行合理分摊，连同开工期间发生的制造费用，一并计入产品的生产成本。　　制造企业可以根据自身经营管理特点和条件，利用现代信息技术，采用作业成本法对不能直接归属于成本核算对象的成本进行归集和分配。　　**第三十七条** 制造企业应当根据生产经营特点和联产品、副产品的工艺要求，选择系数分配法、实物量分配法、相对销售价格分配法等合理的方法分配联合生产成本。　　**第三十八条** 制造企业发出的材料成本，可以根据实物流转方式、管理要求、实物性质等实际情况，采用先进先出法、加权平均法、个别计价法等方法计算。　　**第三十九条** 制造企业应当根据产品的生产特点和管理要求，按成本计算期结转成本。制造企业可以选择原材料消耗量、约当产量法、定额比例法、原材料扣除法、完工百分比法等方法，恰当地确定完工产品和在产品的实际成本，并将完工入库产品的产品成本结转至库存产品科目；在产品数量、金额不重要或在产品期初期末数量变动不大的，可以不计算在产品成本。　　制造企业产成品和在产品的成本核算，除季节性生产企业等以外，应当以月为成本计算期。　　**第四十条** 农业企业应当比照制造企业对产品成本进行归集、分配和结转。　　**第四十一条** 批发零售企业发生的进货成本、相关税金直接计入成本核算对象成本；发生的采购费，可以结合经营管理特点，按照合理的方法分配计入成本核算对象成本。采购费金额较小的，可以在发生时直接计入当期销售费用。　　批发零售企业可以根据实物流转方式、管理要求、实物性质等实际情况，采用先进先出法、加权平均法、个别计价法、毛利率法等方法结转产品成本。　　**第四十二条** 建筑企业发生的有关费用，由某一成本核算对象负担的，应当直接计入成本核算对象成本；由几个成本核算对象共同负担的，应当选择直接费用比例、定额比例和职工薪酬比例等合理的分配标准，分配计入成本核算对象成本。 　　建筑企业应当按照《企业会计准则第15号——建造合同》的规定结转产品成本。合同结果能够可靠估计的，应当采用完工百分比法确定和结转当期提供服务的成本；合同结果不能可靠估计的，应当直接结转已经发生的成本。　　**第四十三条** 房地产企业发生的有关费用，由某一成本核算对象负担的，应当直接计入成本核算对象成本；由几个成本核算对象共同负担的，应当选择占地面积比例、预算造价比例、建筑面积比例等合理的分配标准，分配计入成本核算对象成本。　　**第四十四条** 采矿企业应当比照制造企业对产品成本进行归集、分配和结转。　　**第四十五条** 交通运输企业发生的营运费用，应当按照成本核算对象归集。　　交通运输企业发生的运输工具固定费用，能确定由某一成本核算对象负担的，应当直接计入成本核算对象的成本；由多个成本核算对象共同负担的，应当选择营运时间等符合经营特点的、科学合理的分配标准分配计入各成本核算对象的成本。　　交通运输企业发生的非营运期间费用，比照制造业季节性生产企业处理。　　**第四十六条** 信息传输、软件及信息技术服务等企业，可以根据经营特点和条件，利用现代信息技术，采用作业成本法等对产品成本进行归集和分配。　　**第四十七条** 文化企业发生的有关成本项目费用，由某一成本核算对象负担的，应当直接计入成本核算对象成本；由几个成本核算对象共同负担的，应当选择人员比例、工时比例、材料耗用比例等合理的分配标准分配计入成本核算对象成本。　　**第四十八条** 企业不得以计划成本、标准成本、定额成本等代替实际成本。企业采用计划成本、标准成本、定额成本等类似成本进行直接材料日常核算的，期末应当将耗用直接材料的计划成本或定额成本等类似成本调整为实际成本。　　**第四十九条** 除本制度已明确规定的以外，其他行业企业应当比照以上类似行业的企业对产品成本进行归集、分配和结转。　　**第五十条** 企业应当按照第三十四条至第四十九条规定对产品成本进行归集、分配和结转。企业内部管理有相关要求的，还可以利用现代信息技术，在确定多维度、多层次成本核算对象的基础上，对有关费用进行归集、分配和结转。**第五章 附 则**　　**第五十一条** 小企业参照执行本制度。 　　**第五十二条** 本制度自2014年1月1日起施行。　　**第五十三条** 执行本制度的企业不再执行《国营工业企业成本核算办法》。 |